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1 선고 2016가합57736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8 선고 2018나204089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1 선고 2016가합577363 판결

전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1. A

2. 주식회사 B

3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

변론 종결 2018. 5. 24.

판결 선고 2018. 6. 21.

주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은 952,386,344원 및 그 중 497,613,390원에 대하여는 2016. 10. 27.부터,

362,007,737원에 대하여는 2016. 11. 7.부터, 91,208,835원에 대하여는 2017. 6. 23.부터 각

2017. 10. 31.까지는 연 10%,

나.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454,767,582원 및 그 중 362,077,737원에 대하여는 2016. 11. 7.부터, 91,208,835원에 대하여는 2017. 6. 23.부터 각

2017. 10. 31.까지는 연 10%,

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사이에 2016. 5. 16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109,433,4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3. 피고 C은 원고에게 218,866,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12, 14, 15,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다 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, 증인 D의 증언, 감정인 E의 감정 결과,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동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보증 및 대출의 실행

1)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, 피고 A[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, 피고 주식회사 B(변경전 상호: G,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'피고 B'라고 한다)의 종전 대표이사이다], 피고 B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고 한다)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, 소외 회사와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, 주식회사 H(이하 'H'이라고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,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제1보증 계약	소외 회사	피고 A	중소기업 은행	2009.03.09.	I	500,000,000원 (500,000,000원)	2010.03.09.
제2보증 계약	소외 회사	피고 A, B	H	2012.04.25.	J	360,000,000원 (400,000,000원)	2013.04.24.
제3보증 계약	피고 B	피고 A	중소기업 은행	2011.03.24.	K	90,000,000원 (100,000,000원)	2012.03.23.

2) 이후 제1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7. 3. 3.로, 제2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7. 4. 21.로, 제3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7. 3. 17.로 각 변경되었다.

3)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소외 회사 및 피고 B가 대출금을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와 피고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,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(2016. 10. 27.부터 현재까지 연 10%)에 의한 지연손해금과, ②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추가보증료,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.

나.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

1)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2016. 10. 5.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보증계약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당좌부도를 사유로, 같은 달 7. H으로부터 제2보증계약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부도를 사유로, 2017. 3. 21.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3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의 원금 연체를 사유로 한 각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받았다. 이에 원고는 2016. 10. 27. 중소기업은행에게

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501,165,710원을, 같은 해 11. 7. H에게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362,007,737원을, 2017. 6. 23. 중소기업은행에게 제3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1,208,8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2) 원고는 제1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2016. 10. 27. 2,087,670원, 같은 해 11. 7. 1,464,650원을 각 회수하였고, 이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,372원이 확정되었다.

3)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금 1,144,410원을 지출하였고, 제3보증계약과 관련하여 406,60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.

다.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 등

1) 피고 B는 2016. 5. 16. 자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(주문 제2항 기재 각 매매계약, 이하 '이 사건 각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, 같은 달 25.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938호로,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93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2)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G,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, 채권최고액 597,600,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모두 2016. 5. 25.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.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99,133,088원이었다.

3)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. 6. 19. 기준 시가는 각 2억 5,900만 원이다.

2. 피고 A,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에게, ① 피고 A은 952,386,344원 [= 제1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잔액 497,613,390원(= 대위변제금 501,165,710원 - 회수금 2,087,670원 - 회수금 1,464,650원) + 제2보증계약 대위변제금 362,007,737원 + 제3보증계약 대위변제금 91,208,835원 + 제1보증계약 관련 확정지연손해금 5,372원 + 제3보증계약 관련 추가보증료 406,600원 + 법적절차비용

1,144,410원] 및 그 중 제1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497,613,39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. 10. 27.부터, 제2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362,007,73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. 11. 7.부터, 제3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91,208,83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. 6. 23.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. 10. 31.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정한 연 10%, ②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454,767,582원(= 제2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362,007,737원 + 제3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91,208,835원 + 제3보증계약 관련 추가보증료 406,600원 + 법적절차비용 1,144,410원) 및 그 중 제2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362,007,73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. 11. 7.부터, 제3보증계약 관련 대위변제금 91,208,83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. 6. 23.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. 10. 31.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정한 연 10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.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결국 2016. 9. 29. 이 법원

2016회합10024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16. 11. 7. H에게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362,007,737원을, 2017. 6. 23. 중소기업은행에게 제3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1,208,835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다.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- 1) 피고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- 2)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,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, 그 처분행위가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).
- 3) 보건대, 이 법원의 기업은행, L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, ① 피고 C은 2016. 2. 4. 피고 A에게 1,000만 원을 송금하고, 같은 달 16. 소외 회사로부터 1,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, ② 피고 C은 2016. 5. 25. 피고 B에게 40,736,912원을 송금하였는데,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다시 2,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C이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, ③ 피고 C이 2016. 5. 31. 피고 B에게 송금한 2,000만 원이 곧바로 소외

회사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, ④ 피고 C이 2016. 6. 20. 소외 회사로부터 6,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곧바로 피고 B에게 송금하고,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4,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3,9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실, ⑤ 피고 C이 2016. 7. 28. 소외 회사로부터 5,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곧바로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, 즉 ① 피고 C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종전 대표이사인 피고 A,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금융거래를 한 점을 고려할 때, 피고 C이 2016. 4. 17.경 친동생의 소개로 아파트형공장 투자매물을 찾던 중 우연히 매매공고를 보고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위 피고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, ② 피고 A, B, C, 소외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이 순환된 정황이 엿보이고, 피고 C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소외 회사로부터 출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

1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6. 5. 2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. 따라서 이 사건 각

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합계액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및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론종결시까지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2) 보건대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. 6. 19. 기준 시가 각 2억 5,9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, 여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99,133,088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시가 중 218,866,912원(= 259,000,000원 × 2 - 299,133,088원)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. 한편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454,767,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책임재산 범위를 초과하므로,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각 109,433,456원(= 위 218,866,912원 ÷ 2)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18,866,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 김선희

판사 정금영

판사 임미경

별지